

『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
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·시행 하였으나,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시민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측면이 발생 함에 따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침 폐지
-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·합리화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개선,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·절차 개선

3. 주요내용

-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·시기 등 삭제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「신고포상금제」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·합리화 및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및 과태료 징수·절차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1회용품 사용억제 「신고포상금제」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·시기 삭제 및 제명 변경 ⇒ 「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(안 제2조부터 안 7조까지)
-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(안 제5조)
 -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

○ 검토 결과

-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 폐지('08. 5. 13)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삭제하고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건의 합리화,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및 과태료 징수·절차를 개선한 조례안으로

- 1회용품 사용억제 및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관련 규정의 합리화 및 실효성 제고로
-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인 위법 신고 행위를 차단하고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기관(행정청)의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